



Special Olympics
Korea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2008. 01. 28. 제정 (문화관광부 제750호)
2011. 07. 15.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2. 04. 26.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3. 04. 24.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5. 02. 17. 전면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6. 03. 16.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0. 08. 13.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0. 12. 30.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1. 12. 23.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2. 04. 22.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 약칭 SOI) 및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World Intellectual Impairment Sport: 약칭 Virtus)에 가입한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스포츠단체로서 그 명칭은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Special Olympics Korea(SOK) 또는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KSAID)라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전세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다운증후군 및 복합장애인 중 지적장애를 가진자(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국제 스페셜올림픽 및 국제지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기본 이념과 철학에 따라 한국의 발달장애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운동경기와 문화예술 활동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은 물론 타고난 잠재능력을 계발, 발전 하는데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 구성원들과 우애를 나누고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SOI),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 지역본부(SOEA) 및 국제지적장애인 스포츠연맹(Virtus), 국제지적장애인 아시아본부(Virtus-Asia) 등 국제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개정 2022. 4. 22.>

제3조(소재지)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시·도지부)

- ①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 시·도, 특별자치 시·도에 지부를 둔다.(이하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라 한다.)
- ②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다.
- ③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 및 지부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종목별 위원회)

- ①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각종 대회 of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종목별 위원회를 둔다.
- ② 종목별 위원회의 구성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및 지역의 동·하계 종합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의 개최
2. 세계 및 지역의 동·하계 종합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 대회의 참가
3. 국내의 동·하계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 참가 및 개최
4. 발달장애인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의 보급
5. 발달장애인의 운동능력 배양
6. 발달장애인의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7. 발달장애인 선수 선발, 육성, 지원과 등록, 관리 및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8.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등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 대회 기념사업
9. 발달장애인 선수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업
10. 발달장애인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보급

11. 기타 발달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수익사업) ①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 사회의 승인과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제6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1. 정회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SOI 및 Virtus의 임원

나. 종목별위원회 위원

다. SOK 선수대표

2. 특별회원

가. 특별회원은 본 위원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본 위원회 발전 및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① 제9조에 따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본 스페셜 올림픽코리아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2/3이상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대 의 원 총 회

제13조(구성) ①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SOI 및 Virtus의 임원 <개정 2022. 4. 22.>
2.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종목별 위원회의 장
3. 발달장애인 선수대표 3인 이내(청소년회의대표 1인, 스페셜올림픽 메신저 2인)
4. 가족위원회 위원장
5. 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 위원장
6.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7.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8. 성화봉송위원회 위원장
9.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
10. 후원위원회 위원장
11. 홍보위원회 위원장
12.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전에 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13조 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의 가맹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 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한 후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제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의 2/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사무총장 및 부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8. 시·도 스포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종목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의 개시 2개월 이내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예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임 원

제26조(임원) 본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
4. 감사 2인

제27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게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의 선임)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이사회 동의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②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③ 이사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인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0. 08. 13.>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0.>, <개정 2021. 12. 23.>

1.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3. 제3항의 스페셜올림픽 선수 이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메신저 1명, 선수위원회 위원장 1명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임원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의 직무를 행한다.

⑤ 감사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⑥ 임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종목별 경기단체 및 시·도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당연직 이사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16.>

- 제33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9조에 해당하는 때
 2. 종목별 경기위원회 및 시·도 스포셜올림픽코리아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위촉임원, 자문위원)**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고문, 위촉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2. 고문, 위촉임원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위원회 설치)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목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스포츠위원회와 비스포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스포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위원회
2. 경기위원회
3. 경기력향상위원회
4. 생활체육위원회
5. 국제위원회
6. 등급분류위원회
7. 상별위원회
8. 선수위원회 <개정 2020. 08. 13.>

③ 비스포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위원회
2. 선수건강증진위원회
3. 문화예술위원회
4. 대외협력위원회
5. 자원봉사위원회
6. 성화봉송위원회
7. 후원위원회
8. 홍보위원회

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스포츠위원회와 비스포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기금관리운영 위원회)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기금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기금재산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수익금과 사랑나눔 위캔의 기부금 등 기금을 목적으로 기부·증여 등을 통하여 편입된 수익금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

제39조(재원)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 기본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4. 사업 수입금
5. 임원 및 회원의 찬조금
6. 기금의 이자
7.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8. 기타 수입금

②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 <신설 2015. 11. 4.>

제40조(부동산 임대수익의 사용) <신설 2020. 08. 13.>

① 제39조(재원) 1항 7호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소유의 부동산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총액에서 수선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당해 부동산 관리 비용과 당해 부동산 취득으로 부담하는 대출이자 상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50 이상을 2013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② 그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 원금상환

2. 스페셜올림픽을 위한 사업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

③ 각 사업별 과실금 사용한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옥 은행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상환 : 40%
2.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 30%
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비 : 30%

④ 과실금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회계연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종목별 위원회 및 시·도지부의 감사)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종목별 위원회와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사업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기금

- 제47조(기금의 설치)** ① 발달장애인들의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금을 설치한다.
- ②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2.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 조성 목적의 기부금, 후원금 및 찬조금
5. 사랑나눔 위캔으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기부 받은 수익금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수익금

② 1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은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기본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그 과실금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발달장애인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
2.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기념사업
3. (사)사랑나눔 위캔 기부 수익금을 활용한 장학사업
4. 기타 스페셜올림픽을 위한 사업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② 기금 과실금은 법인 수지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 사용 후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장 스페셜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제50조(스페셜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① 스페셜올림픽 헌장 및 그 부속 규칙에 따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국내에서 “스페셜올림픽 명칭, 심볼, 기, 표어, 휘장, 주제가 등을 포함한” 스페셜올림픽과 유사한 용어 등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SOI)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단체이다.

②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Virtus) 헌장 및 그 부속규칙에 따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국내에서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Virtus) 명칭, 심볼, 기, 표어, 휘장, 주제가 등을 포함한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과 유사한 용어” 등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단체이다. <개정 2022. 4. 22.>

- ③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의해 파견 또는 개최하는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국제 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종합대회 등 국제 종합대회 관련 국제기구의 지적재산과 제반사항은 해당 국제기구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명칭, 로고, 표장”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전국대회 및 국제 종합대회에 관련된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갖는다.
- ⑤ 제1항 내지 4항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은 스페셜올림픽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⑥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처

- 제51조(설치 및 운영)**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장 보칙

- 제52조(해산)**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1. 4.>

- 제53조(정관변경)** 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시행규정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

제5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2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가맹단체 및 시·도 지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에 따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시·도 지부는 이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 및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의 직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대한지적장애스포츠협회의 회장은 이 정관에 따라 부회장 1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제규정의 명칭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